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9. 12. 1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99. 12. 20

다. 상정일자 :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상정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 토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법률 제5864호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일부 현실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고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법령의 근거가 없는 용어를 삭제 및 정비함.
- 분뇨등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 규정을 삭제함.
- 축사의 이전조치등의 규정을 삭제함.
-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는 99. 2. 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등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분뇨 및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등을 주민들의 편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하겠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률로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